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추승우 의원 외 41인

나. 의안번호 : 제1973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2. 제안사유

-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,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-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신설(안 제7조의4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 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10. 29. ~ 2020. 11. 5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수정 가결

-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안전관리는 교육부·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봄

※ 「교육부-행정안전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가이드라인('19. 4.)」

1) 교통운영과-15038호(2020.11.18.)

- 다만 제7조의4 시장이 “인허가 기관의 장”에게 계획 수립 및 요구를, “안전관리계획”을 “통학로 안전확보 계획”으로 수정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·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하고, 공사 시행을 통학 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

※ 참고 : 연도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

구 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발생(건)	458	90	96	81	77	114
사명(명)	7	1	2	1	1	2
부상(명)	467	90	101	85	76	115

-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적치물 및 공사장비, 돌발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

상황을 고려할 때

동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통학로’²⁾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‘어린이보호구역’과 ‘그 밖에 서울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’로 정의하고 있음에도

동 개정조례안은 ‘어린이보호구역내’ 공사현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‘통학로’ 중 ‘시장이 인정하는 통로’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도 필요할 것임

- 한편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3조³⁾ 및 제4조⁴⁾에서는 ‘1개 차로 이상을 점용’하는 일정

2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6. "통학로"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"어린이 보호구역"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
3)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, 그 점용기간이 2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)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.

1. 도로의 신설·개설·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	2. 지하철건설 및 유지·보수 공사
3. 상·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	4. 전력 및 통신공사
5.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	

4) 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

규모 이상의 공사 구역에 『도로교통법』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동 조례에 따른 통학로가 포함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

동 개정조례안은 차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
2.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